# HRPP SOP Ver4.0 (2021년 9월 1일 시행)

## 주요 변경사항

### 2021년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·인증 서면평가 보완 및 권고 결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.

- 연구자 교육 이수 기한 변경 (임상연구 수행: 3년마다 → 매년)
- IRB 구성, 위원해임 요건, 회의 성립 요건, 의결방법 등 개정
- IRB 신속심의자 기준 강화 및 신속심의 점검표 마련
- COI 검토 범위 확대
- 배아연구,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심의점검표 등 마련
- 배아생성의료기관, 인체유래물은행 규정 개정
- \* 연구자 준수사항 위주로 개정 내용 정리하였습니다. IRB 심의 관련 사항은 SOP 참조 바랍니다.



## ☑ 임상연구 수행 연구자 교육 기한 강화

①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 연구자: 매년 종사자교육



- ② 임상시험 수행 연구자: 매년 GCP 교육
- ③ 임상연구 수행 연구자: 3년마다 → 매년 임상연구윤리 교육
  - 임상시험 수행 연구자는 ①,② 교육 이수 가능
  - 임상연구 수행 연구자는 ①,②,③ 교육 이수 가능

#### @ 참고

- **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교육**: 의약품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법정 필수 교육이다. 신규, 심화, 보수(계속) 순으로 매년 이수해야 한다.
- GCP(Good Clinical Practice) 교육: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필수 교육이 며, ICH-GCP, KGCP(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) 등을 포함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**임상연구윤리 교육**: 인간대상연구·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임상연구 수행 연구자를 위한 교육이며, 생명윤리법 및 국내외 연구윤리 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.



#### IRB 심의 신청 서식 변경 (1)



#### 심의면제사유서

2.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입니까? 
예 (아래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)

질문1.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을 직접 수집합니

- □ 예 (심의면제 불가)
- □ 아니오 (→ 질문2 이동)

질문2. 기증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 으면서 다음 각 항목에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.

- □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(이하 "인체유래물등") 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 인체유래물을 제공 한 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
- □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 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
- □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 일반 공 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 및 가공된 연구재료를 사용하는 연구(병원체, 세 포주 등 포함)
- □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,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없는 연구 (다만, 배아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IRB심의대상임)
- □ 해당 사항 없음 (→ 질문3 이동)

생명윤리법시행규칙 제33조1항 제1호에 따라 심의면제사유서 **질문 2** 수정

> 생명윤리법시행규칙 제33조1항 제2호, 3호에 따라 심의면제사유서 **질문 3, 질문 4** 추가

> > 질문3.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입니까?

- □ 예 (심의면제 가능)
- □ 아니오 (→ 질문4 이동)

※ 다만, 이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 보해야 합니다.

질문4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및「고등교육법」제 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 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 하여 수행하는 연구입니까?

- 예 (심의면제 가능)
- 아니오 (심의면제 불가)



## ✓ IRB 심의 신청 서식 변경 (2)



#### 동의의 문서화 면제 사유서

IRB는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설명문에 연구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, 동의의 문서화 면제는 적절한 사유를 확인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함.

<u>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서면동</u>의가 면제 가능합니다. 단,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(설명문)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
- 1. 동의서에만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기록되며, 연구 기록의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연 구대상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\_\_\_\_\_\_ 아니오\_\_\_\_\_)
  - ※ (예)로 표시한 근거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 전화/온라인 설문조사 인터뷰 등과 같이 연구가 최소 위험 연구이면서, 서면 동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경우 (예\_\_\_\_\_ 아니오\_\_\_\_)
  - ※ (예)로 표시한 근거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✓ IRB 심의 신청 서식 변경 (3)



#### 이해상충보고서

경제적 이해상충 뿐만 아니라 연구의 수행 및 IRB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범위의 이해상충이 적절히 보고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수정

연구자는 모든 연구계획서 심의 의뢰시, [서식] 연구계획심의의뢰서에 포함된 이해관계보고서를 제출합니다. 이해상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, 변경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상충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경제적 이해상충 외 연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해상충이 있다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 (모든 외적 이해관계를 포함)



## IRB 심의 신청 서식 변경 (4)



#### 연구진행 점검양식

종료보고 미제출 및 승인 무효 연구(보고기한 미준수 과제)에 대한 관리 절차 강화

| IRB No.           |   |   |   | IRB 승인일 | 년 | 월 | 일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------|---|---|---|
| IRB 유효기간<br>만료예정일 | 년 | 월 | 일 |         |   |   |   |

- ※ IRB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.
  - 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대상자에게 개입이나 상호작용을 중단 (연구대상자가 연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최 선인 경우와 같이 안전이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외)
  - ② 새로운 연구대상자의 등록 불가
- ※ IRB 유효기간이 만료 이후 제출된 연차지속심의라면, IRB유효기간 만료 이후 연구 진행 상황과 지속심의 지연에 대한 사유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지연 사유 및<br>연구 진행 현황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재발방지 대책             |  |



- ※ 다만, 아래의 경우 별도의 [연구계획 미준수 사례보고서]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IRB 유효기간 만료 이후, 연구대상자(또는 인체유래물)를 새롭게 등록하거나, 연구를 수행한 경우



#### ✓ IRB 심의 신청 서식 제정



#### 인체유래물등 폐기 및 이관에 관한 심의의뢰서



#### 배아줄기세포주 제공에 관한 심의의뢰서

배아줄기세포주 제공에 관한 심의의뢰서

인체유래물등 폐기 및 이관에 관한 심의의뢰서

| □ 인체유래물등 폐기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폐기하려는<br>인체유래물등의<br>종류와 수량 | 폐기하려는 인체유래물등 종류:<br>폐기하려는 인체유래물등 수랑: |  |  |
| 폐기 사유                      | 폐기 사유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폐기 방법                      | 제공하는 대상자 수 및 항목폐기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        |  |  |
| 개인정보 폐기 여부                 | □ 예 □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
| IRB No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IRB | 승인일     |   |    |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|---|----|--|
|         | (국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|   |    |  |
| 과제명     | (영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|   |    |  |
|         | Protocol No.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 Version |   |    |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| 성명  |         | 속 | 직위 |  |
| 연구자     | 책임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|   |    |  |
|         | 공동연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|   |    |  |
| 의뢰자     | 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|   |    |  |
| 배아줄기세포주 | 배아줄기세포주 명칭: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|   |    |  |
| 상세      | 배아줄기세포주 등록번호: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|   |    |  |
| 제공 목적   |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 받아 수행할 연구의 제목 및 목적 등 기술 |    |     |         |   |    |  |



제공 방법 및 절차

\*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줄기세포주 제 공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전체 SOP 확인 방법



공지사항 행사안내 교육안내

- 〈2021년 4월 29일(목) 32차 중대동물실험
-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학연구 워크
- 2021년도 원내연구과제(집중I, 일반I, 신진,
- 2021년도 의학연구혁신센터 연구벤치 배정
- 2021년도 국립교통재활병원 연구과제 선정
- 2021년도 국립교통재활병원 연구과제 공모

• 2021년도 의학연구혁신센터 연구교수실 배

임상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(http://hrpp.snuh.org)

의생명연구원 임상연구윤리센터 회원이어야 하며, 서울대병원 소속임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합니다.

@ 관련 문의: 임상연구윤리센터 정책교육실 (02-3675-6825)